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214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2. B
검 사 하경준(기소), 김규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규태(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정철원(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5. 9. 1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827,217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0. 7.경 자본금을 마련한 후 대부업을 시작하면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타인 명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액을 대부하여 고금리의 이자를 수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8. 말경 피고인 B를, 2020. 9. 말경 C을 각 직원으로 고용한 후, 피고인 A은 대부금액 승인 및 상환금 관리, 직원관리 및 급여 지급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대부희망자 모집 및 대부 장부 관리 등 경리 업무를, C은 대부 실행, 변제 독촉 및 수금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미등록 대부업 영위

가. 피고인 A 단독범행 부분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D에게 2,0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제1~16항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 공동범행 부분

피고인들은 C과의 공모에 따라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E에게 2,0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제17~304항 기재와 같이 총 288회에 걸쳐 합계 41억 8,250만 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 영위 및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피고인들은 C과의 공모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2. 1. 19.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그에게 2억 원을 대부하기로 하고 선이자, 수수료를 제외한 1,66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여 대부업을 하고, 이후 2022. 1. 19.경부터 2022. 4. 9.경까지 G으로부터 현금 교부 또는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생략)로의 송금 방식으로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총 2,260만 원을 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140.5%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7.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G에게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대부하기로 하면서 선이자, 수수료를 제외한 합계 8,76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1억 4,760만 원을 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J 이자율 회신서 첨부 - 6건 대부 범죄일람표 최종),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전화에서 대출 광고 관련 메시지 내용 발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회신서류

1. 각 대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5. 1. 21. 법률 제2071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단독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공모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정

○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길고, 영업 규모도 상당히 크다. 업주로서 자본금을 마련하고 명의를 빌린 후 자금을 관리하면서 직원을 고용하여 대부업을 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구나 이미 동종 범행으로 2016년 벌금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9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은 전력이 있고, 이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하지 않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착수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채무자는 1명밖에 밝혀지지 않았고, 그 밖에 채권추심 과정에서 불법한 일을 저지른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미등록 대부업 상대 채무자 총 68명 중 40여 명(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상환한 채무자 1명 포함)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자녀를 부양해야 할 사정이 있는 점도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과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고, 형법 제51조의 여러 다른 양형조건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기간이 길고 영업 규모가 큰 미등록 대부업 등 범행에서 광고, 대출 희망자와의 제1차 면담 및 다른 직원과의 연결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 점, 이미 동종 범죄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직원으로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지위에 있었던 점, 정식 처벌전력은 2001년과 2008년 이중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이 전부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여러 다른 양형조건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판사 안경록 _____



대 구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노377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하경준(기소), 김규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차경환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5. 9. 18. 선고 2025고단214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2.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827,217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개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길고, 영업 규모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6년 벌금형을 받고, 201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채무자는 1명에 불과하고, 그 밖에 미등록 대부업 영위 과정에서 불법적인 채권추심 등의 행위를 저지른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원심 단계까지 미등록 대부업 상대 채무자 중 40여 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6명이 추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



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5. 1. 21. 법률 제2071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단독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공모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20

재판장 판사 채성호 _____

 판사 권재호 _____

 판사 안정현 _____